

연봉제 교직원 연봉시행세칙

제정: 2024.06.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봉제 시행을 통한 성과의 공정한 배분과 동기부여 및 재정적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실현과 연봉제 시행에 따른 평가와 보상의 구체적 방안을 정하기 위해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 교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 대상자는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중 4급 이상의 직원 및 2011.3.1. 이후 임용된 전임교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① “연봉제”란 보수가 연단위로 결정되는 급여 제도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봉월액(기본급)”이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지급 기준금액을 말하며, 봉급, 연구비, 학생지도비로 구성한다.
④ “연봉외 급여”란 제2항에 정한 연봉 이외에 제5장에서 정한 제 수당을 말한다.
⑤ “성과연봉”이란 직전학년도 개인의 인사평가 및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기준에 의해 부가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
⑥ “일할계산”이란 연봉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때 해당 월 지급액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⑦ “초임연봉”이라 함은 직급별 임용 교직원에 대해 정해진 연봉액을 말한다.

제 2 장 연 봉

제4조(연봉) ① 연봉의 구성은 기본연봉과 연봉 외 급여로 한다.
② 연봉은 매년 결정하며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인상율에 따라 누적 계산한다.
③ 연봉계약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연봉의 결정은 2월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봉 계약기간 중 임용사항이 변동되어 연봉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을 변경 체결한다.
⑤ 교직원의 연봉계약서는 개인별로 체결한다.

⑥ 외국인 전임교원,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평가 절차) 성과연봉을 위한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과 직원인사평가규정 절차에 따른다.

제6조(연봉조정위원회) ① 교직원의 연봉 책정(개인별 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봉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교무처장, 사무처장, 교무팀장, 사무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연봉제 교직원 5인의 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간사 업무는 사무팀에서 담당한다.

③ 연봉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봉이의신청) ① 교직원은 본 대학교가 책정하여 통보한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사무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

② 총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회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의 연봉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봉미타결시 연봉지급)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조정이 미 타결된 교직원에게는 연봉만료일부턴 연봉조정기간까지 직전년도 연봉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후 연봉조정 확정시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교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연봉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교직원의 연봉계약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체의 자료를 유출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연봉월액(기본급) 결정 및 연봉계산) ① 기본연봉 인상률은 본 대학교의 경영방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초임연봉) 교직원의 초임연봉은 별도의 보수책정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교직원 승진시 연봉 가산액) 교직원이 연봉계약기간 중에 승진할 경우에는 연봉 가산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정규 교직원 외 급여) 비전임 교원, 비정규직 직원, 조교의 급여는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연봉의 지급

제14조(연봉 지급일) ① 연봉은 매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7일에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② 연봉월액 지급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7일에 선지급 한다.

제15조(연봉의 지급방법) ① 기본연봉액을 12개월로 균등하여 매월 지급한다.

② 연봉외 급여 중 보직수당, 가족수당, 급량비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16조(연봉 계산) ① 신규채용, 전임, 전보, 승진, 감봉 등 모든 임용의 경우 급여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 재직 교직원이 면직되는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당해 월에 해당하는 연봉월액, 보직수당, 급량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5년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탄핵, 파면, 해임에 의한 면직과 그달 1일자 면직 제외)되거나 병역 기타 법률의 규정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시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과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③ 급여 지급시 계산 착오 및 기타사유로 과소 및 과다 지급된 때에는 해당월을 기점으로 정산한다.

제17조(병가 중의 급여) 병가중의 연봉은 교원 복무규정 제17조 4항과 직원 복무규정 21조에 4항에 따른다.

제18조(휴직중의 급여) ① 휴직중의 교직원 처우에 대하여는 법인정관 및 인사규정의 휴직 중 처우규정을 준용하며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할 경우 연봉은 휴직 당시의 기본연봉액으로 결정한다. 단, 본 대학교의 필요에 의해 휴직을 인정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연구년 연봉) ① 연구년 교수의 연봉은 교원연구년제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 4 장 수 당

제20조(보직수당) ① 교원이 본직외의 직에 보임된 때와 직원이 일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직무를 부여받을 때는 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특별업무수당 및 연구수당) ① 총장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직종, 또는 직무, 평가보고서 작성, 연구수행, 위원회, TF운영 업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와 지급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연 봉 외 급 여

제22조(연봉 외 급여) 급량비, 가족수당, 업무추진비, 보직수당, 조정수당, 특별업무수당, 연구수당은 연봉 외 급여로 지급하며, 지급범위와 방법, 금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①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4조(성과연봉) ① 기본연봉 및 제 수당 외에 개인 및 조직의 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본 대학교의 예산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보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 봉 조 정 통 지 서

◎ 대상자 인적사항

부서명	성명	직급
	홍길동	일반직 9급

◎ 연봉 조정 통지 내역

1. 관련 규정

연봉제 교직원 시행세칙 제10조(직원의 연봉결정 및 조정)

2. 연봉지급기간 : 2024.03.01. ~ 2025.02.28.(1년간)

3. 2023년 연봉 지급 내역

(단위 : 원)

2024년 연봉	인상률	연봉외수당	성과평점등급	성과연봉
00,000,000	5%	0,000,000	A	0,000,000

※ 위 대상자의 연봉 조정에 따른 연봉결정 내역을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의 연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봉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2024년 연봉 지급 내역을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연봉 금액 외에 기타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함)

만약 위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 일 이내에 사무팀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위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재심신청시, 재심의 기간 동안 기존 연봉을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재심신청 결과, 연봉이 재조정될 경우 연봉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므로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연봉은 제24조 2항에 따라 성과연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늦어질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